

©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-215호

강북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80(2014.3.6.)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(2015.6.11.)호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되고, 2008.06.26.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·고시하고,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1월 19일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- 가. 정비사업의 명칭: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- 나. 추진위원회의 명칭: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
- 다.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: 2008.06.26.
- 라. 사업시행자 지정·고시일: 2021.11.19.
- 마.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일: 2021.11.20.
- 바. 취소 사유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
- 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(☎901-685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